

##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52
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제천시재난관리 기금을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맞게 일부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회계공무원(안 제9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13조)

### 3. 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[일부개정 2007. 1. 26 법률 제8274호]
- 「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」 [제정 2005. 8. 4 법률 제7664호]

### 4. 의안전문 : 복 임

### 5. 신구조문대비표 : 복 임

- 첨부 : 1. 근거법령(발췌본) 1부  
 2. 입법예고 사본 1부

##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2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시행령」 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

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로 한다

제13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9조(회계공무원)① (생 략)</b></p> <p>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<u>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</u>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9조(회계공무원)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<u>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」</u>의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① (생 략)</b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<b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</p>
<p>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소속 보부장, 직속기관장,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제천시 소속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로 한다</p>
<p><b>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①</b></p> <p>시장은 <u>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</u>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① -</b></p> <p>- <u>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1항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## 관 계 법령

###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(일부개정 2007. 1. 26 법률 제8274호 )

#### 제67조 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###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(일부개정 2006. 6. 29 대통령령령 제19563호 )

#### 제75조 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·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

(법률 제7664호 2005. 8. 4 제정)

#### 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-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

(제정 2005. 12. 28 대통령령 19197)

**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  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**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515

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7. 4. 4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조 레 명 :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-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의 규정에(법률 제7188호 2004. 3. 11) 의거 조성된 제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
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맞게 일부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

#### 3. 주요내용

- 회계공무원(안 제9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13조)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10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재난관리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☎ 641-5641~5642 FAX 641-5659 E-mail:jogh04@hanmail.net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이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 등